

고성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832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. 11. 27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1. 28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3. 12. 16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개정사유

- 급수장치의 소유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의 취득전 발생한 의무사항인 체납요금 등에 대한 승계사항 및 체납금에 대한 증가산금 징수 항목을 정하여 수도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함은 물론,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공사비의 선납 및 신청 취소 관련 조항 수정 추가(안 제11조제1항, 제2항)
- 공설공용에 대한 시설분담금 미 징수 조항 삭제(안 제12조제3항)
- 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사항 추가(안 제22조제3항)
- 체납금에 대한 증가산금 징수 항목 신설(안 제33조제1·2항)
- 고성군수도급수조례 별표2의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중 옥탕2종 삭제·수정(안 별표2)
- 고성군수도급수조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중 옥탕용2종 삭제·수정(안 별표3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안건은 법령에 맞게 일부 자구 수정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나, 신설되는 부분은 주민의 이해 관계와 주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라 하였습니다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고성시장은 현재 6천만원 정도의 상수도 체납액이 있으며, 조례만 강화하고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데 체납금 증가산금제·급수장치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등의 제도가 실효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?
- 답 : 고성시장은 올 4월 부터는 체납액이 없으며, 체납액은 물건 압류중에 있습니다.
- 문 : 수도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단수를 하는데 이런 조례를 개정해서 많은 주민에게 오히려 부담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지?
- 답 : 30만원 이하 사용자는 해당이 없으며, 중과세하지 않으므로 체납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는 실태이며,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3. 12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